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2016. 10. .
발 의 자	양진오 의원 외 5명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10. .

발 의 자 : 양진오 · 윤종호 · 김상조 · 김인배
김정곤 · 정근수의원(6인)

1. 제안이유

- 수립이 선호되지 않거나 기피되는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가능한 줄이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 신설(안 제9조)

- 구미시 지역에 있는 농작물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함

나. 포획신고 및 포상금지급 절차 신설(안 제10조~11조)

-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

다.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조~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부서의견 : 해당없음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업을 하는 자를”을 “자를”로 한다.

제3조 중 “농업인등”을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시장” 이라”를 ““시장”이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0%”를 “80퍼센트”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통지 받은”을 “통지받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구미시 지역에서 농작물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렵장 운영기간은 제외한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고라니 : 3만원(마리당)

2. 조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제1호·제2호) : 5천원(마리당)

제10조(포획 신고) 제9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u> 규정에 따라 구미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u>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u>뜻은</u>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농업인</u> "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u> 」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 <u>농업인</u> "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 <u>임업인</u> "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 <u>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		

			-	<u>「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u> -----
			---	.
6. " <u>어업인</u> "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 <u>수산업법</u> 」 제2조제12호에		6. -----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구미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피해보상 요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이 해당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 자를 -----
----.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
-----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

제4조(피해보상 요건) -----
----- "시장"이라 -----

-----.

제5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

----- 따른 -----
-----.

-----.

② (생 략)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 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 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조(피해보상 절차) ① (생 략)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

----- 해당연도 -----

-----.

② -----
80퍼센트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피해보상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지받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

<신 설>

<신 설>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구미시 지역에서 농작물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렵장 운영기간은 제외한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고라니 : 3만원(마리당)

2. 조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제1호·제2호) : 5천원(마리당)

제10조(포획 신고) 제9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u>제9조</u> (생 략) <u>제10조</u> (생 략)	<u>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u> <u>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u> <u>제12조</u> (현행 제9조와 같음) <u>제13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처리기간
				피해신고접수 후 5일 이내
조 사 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조 사 일 시	년 월 일		
피해개황	⑤ 피 해 자 성 명			
	⑥ 피 해 지 역			
	⑦ 피 해 내 용		⑧ 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	⑨ 피 해 면 적	(㎡)	⑩ 피해지역사진	(첨부)
피해액 감정	⑪피해액산정방법			
	※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⑫ 산 정 내 역			
	⑬ 피 해 액			
피해보상금산정	⑭ 보상금 산정을			
	⑮ 피 해 보 상 금			
기타 조사 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처리기간
				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
피 해 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조 사 일 시	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⑤ 피 해 지 역			
	⑥ 피 해 면 적		⑦가해야생동물	
	⑧ 피 해 내 용			
	⑨ 피 해 보 상 금 산 정 내 역			
	⑩ 피 해 보 상 금			
기타 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0 0 0 귀하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신청기간
		유해 야생동물 포획 후 5일 이내
신청인	성명	(☎)
	주소	
유해 야생동물 포획현황	포획활동기간	
	포획장소	
	포획 야생동물 종류 및 수량	고라니 00마리 00마리
	사체처리	자가소비(○마리), 매립(○마리), 기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의뢰인	성명	
	주소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 2. 근거서류(사진 등 확인서류) 1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5.8.4.>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수렵이 선호되지 않거나 기피되는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고자 포획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세출이 발생(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포획 포상금 지급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 액
합 계		30,000
고라니	30,000원×900마리	27,000
조류	5,000원×600마리	3,000

4. 작성자

환경안전과 공업7급 최병수 (480-5292)